최 신 판 례 예 규

Marketing Tax consulting

단순 판매대행 사업자가 입금받은 구독료에 대해 계 산서 발급하는 경우 계산서 부성실 작성 가산세가 적 용됨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출판물 판매를 대행하면서 고객에 대한 재 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고객으로부터 입 금 받은 구독료 전액에 대해 해당 내국법인 을 공급자로 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서면법인-244, 2020.05.26

▮질 의

- 질의법인은 '17년 설립된 법인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 △△△의 트렌드정보출판물의 판매를 대행하고 있는 한국 독점 에이전시임
- 질의법인은 고객이 구독료를 지급하는 대상은 △△△임에도 불구하고 질의법인이 입금받은 구독료 총액에 대해 계산서를 발행하여 고객에 게 교부하고
 - 장부상 이를 매출로 계상하였으며, 질의법인 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으로 송금 하고 원가로 계상함

질의내용

- (질의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출판물의 판매를 대행하면서 고객사로부터 입금받은 구독료 총액에 대해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5조의8에 따른 가산세 해당 여부
- (질의2) 질의1에서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 우「법인세법」제75조의8 제1항 제2호의 사실과 다른 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3) 질의1에서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 우「법인세법」제75조의8 제1항 제4호의 가공 또 는 위장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출판물 판매를 대행하면서 고객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고객으로부터 입금 받은 구독료 전액에 대해 해당 내국법인을 공급자로 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75조의8 제1항 제4호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12호를 적용받는경우에는 같은 법 제95조제2항 단서에 따른'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사전법령재산-738, 2020.08.25

▮질 의

•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 신규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함에 따라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아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 제1항 제12호를 적용받아 중과배제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방법(표1 vs 표2)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 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주주 택과 신규주택이 같은 영 같은 조 제1항의 특례요건 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며. 해당 거주주택이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60조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거 주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12호

2021 · 05 · 12 www.eAnSe.com 13

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5조제2항 단서에 따른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 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부업무대행단체인 ◇◇공사가 휴게소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 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휴게소 예고표지를 설치하고 해당 표지를 유지·관리하면서 부 담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 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서면법령부가-3650, 2020,08,21

▮질 의

• 질의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에 따른 정부 업무대행단체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과 · 면 세 겸영사업자로서 고속도로 휴게소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도로법」, 「도로표지규칙」 및 관련 지침에 따라 휴게소 위치를 안내하기 위한 예고표지를 설치하고 이를 유지 · 관리 하고 있음

질의요지

 정부업무대행단체인 ◇◇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예고표지 설치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지정된 「◇◇공사법」에 의한 ◇◇공사가 고속도로휴게소 임대사업을 위하여 휴게소 예고표지를 설치하고 해당 예고표지를 유지관리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공제되는 것입니다.

자회사의 임직원이 벤처기업인 모회사로 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는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의 주식매 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 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법령소득-364, 2020.06.12

▮질 의

- 질의법인은 벤처기업으로 자회사의 임직원에게 2017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함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회사 직원이 이를 행사하기 전에 자회사는 2020.3월 폐업 함

질의

• 벤처기업의 자회사 임직원이 모회사의 주식매 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16 의4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 신

「귀 사전답변의 경우. 자회사의 임직원이 벤처기업 인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 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